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52
----------	-------

발의연월일 : 2014. 10. 28.

발 의 자 : 김성태·황영철·이노근
박성호·함진규·김태원
강석호·권성동·이완영
최봉홍·홍지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현재 국내 택시는 총 25만 5천여 대이며, 이 중 약 5만여 대 정도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와 같은 택시의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은 악화되고 택시종사자의 수입은 감소하면서,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택시 수요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불법 ‘우버’가 택시시장에 진입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나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불법행위를 알선해 주고 있어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여객운수업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이나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의 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및 자동차대여사업자 이외에도 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

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여 여객운수업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아니 된다”를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 된다”를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 된다”를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90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중전의 제8호) 중 “임대한 자”를 “임대한 자와 이를 알선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중전의 제9호) 중 “운행한 자”를 “운행한 자와 이를 알선한 자”로 한다.

- 7.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

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와 이를 알선한 자
8.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제92조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생략)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① 자가용자동차는 고객
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
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생략)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신설>

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① -----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
니 된다.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0조(벌칙) -----

1. ~ 6. (현행과 같음)

7.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
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

<신 설>

7. (생 략)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9.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한 자

10. (생 략)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0. (생 략)

1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12.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13. ~ 16. (생 략)

여한 자와 이를 알선한 자

8.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9. (현행 제7호와 같음)

10. -----

-----임대한 자와
이를 알선한 자

11. -----

운행한 자와 이를 알선한 자

12.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92조(벌칙) -----

-----.

1. ~ 10.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13. ~ 16. (현행과 같음)